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77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5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정의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에서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제1항의 조문내용을 수정하며, 안 제9조의2제3항의 경우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되어야 하나 현재도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관광편의시설 및接客시설 증가에 따른 거주민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8호).
- 안 제9조의2제1항 “시장은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를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으로 수정함(안 제9조의2).
- 조문을 병합하고 수정함(안 제9조의2제3항에서 제6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제1항 중 “시장은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를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으로 하며,

안 9조의2제3항에서 제6항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특별지역”이란 한옥밀집지역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삭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제9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u></p> <p><u>① 시장은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u>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u></p>	<p><u>제9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u></p> <p><u>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u>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2. <u>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청소 등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 입장료(청소 등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해당 특별관리지역의 보존·관리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p>	<p>2. <u>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p><u><삭제></u></p> <p>③ <u>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u></p> <p>2. <u>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 해당 구청장에게 제4항 및 제5항의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특별관리지역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p> <p><삭제></p> <p><삭제></p>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 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9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p> <p>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